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0
----------	-------

발의연월일: 2025. 10. 23.

발 의 자: 이정문 · 박정현 · 박상혁
이언주 · 김우영 · 김병주
윤후덕 · 이연희 · 조승래
백혜련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며,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훈의료’는 보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훈의료에 관한 내용이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개정 소요 발생 시 8개의 법령 모두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의료의 혜택을 이해하고 보훈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훈의료의 기본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정함(안 제5조).
- 다. 보훈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보훈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의료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등 보훈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9조).
- 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훈의료지원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1조).
- 사. 국비지원대상자, 감면지원대상자, 가족지원대상자, 등록신청자 등

대상자별 보훈의료지원의 종류와 비용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국가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진료비를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국고에서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조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보훈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안 제28조).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제도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훈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훈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훈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훈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의료지원”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3. “준(準)보훈병원”이란 국가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국비지원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 본인이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국가가 진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면지원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 본인이 질

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용을 감면받는 사람을 말한다.

6. “가족지원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용을 감면받는 사람을 말한다.

7. “등록신청자”란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8. “전문위탁진료”란 시설, 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허가를 통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여 받는 진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훈의료지원에 대하여 보훈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보훈의료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의료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보훈의료지원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실태 및 보훈의료지원의 현황
4.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보훈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7.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신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훈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훈의료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훈의료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등 보훈의료지원 예산과 관련한 사항
4. 보훈의료지원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보훈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④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훈의료 제공체계

제8조(보훈의료지원 원칙) 보훈의료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한다.

② 보훈병원의 운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준(準)보훈병원의 지정·관리·운영·해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의료지원을 보훈병원이나 준(準)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운영·해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의료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훈의료지원의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훈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보훈의료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의료지원의 내용 외에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2조(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진료) 국가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11조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장 대상자별 보훈의료지원의 종류와 비용

제1절 국비지원대상자

제13조(국비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① 국비지원대상자가 이 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2.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
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
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
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
·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비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① 국비지원대
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
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미
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
양(鎮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
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국비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국비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급여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②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

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 조회·확인을 요청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철구의 지급, 유지 및 보수) 국비지원대상자 중 상이처(傷痍處, 질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철구의 지급, 유지 및 보수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감면지원대상자

제17조(감면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① 감면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

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보철구대(補綴具代)
3.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4. 상급병실 이용 비용
5.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면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① 감면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가족지원대상자

제19조(가족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① 가족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보철구대(補綴具代)
3.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4. 상급병실 이용 비용
5.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① 가족지원대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등록신청자

제21조(등록신청자의 진료) ① 등록신청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훈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은 등록신청자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 중 국비지원대상자로 등록신청한 사람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가 진료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자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기타 보훈의료지원

제22조(재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적 재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수행능력 향상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24조(보훈주치의 제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비용의 지급 및 보훈의료지원의 제한

제25조(국고지원) 국가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26조(보훈의료 지원비용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진료비용의 산정, 청구, 심사 및 지급)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산정, 청구,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보훈의료지원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보훈병원에서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의신청)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의료지원 자격, 보훈의료지원 또는 급여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업무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훈의료지원 사업의 평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보훈의료지원제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훈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보훈의료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훈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육·연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보훈의료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의 운영을 보훈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연구의 방법·내용, 교육·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훈의료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료지원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지원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의료지원비 및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하 “의료지원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등을 받은 경우

2. 의료지원비등을 받은 후 그 의료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등은 제외한다.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훈의료지원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료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

원제도 업무에 관하여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8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34조를 위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 상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9조의4 및 제3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앞의 “제5장 의료지원”을 삭제한다.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장려금·지원비”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그 밖의 지원”으로 한다.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이하”를 “(이하”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을 삭제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진료 중 검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진료비용 및 수당”을 “수당 및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앞의 “제4장 의료지원”을 삭제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려금·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장려금·지원비”로 한다.

⑦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앞의 “제4장 의료지원”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려금·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장려금·지원비”로 한다.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교육·의료·대부 지원 등”을 “교육·대부 지원 등”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을 “대부지원”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종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